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48
----------	------

제출년월일 : 2009. 6. / 0.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 개정
- 현 재활용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 변경 사항 반영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2008. 7. 29) 개정에 따른 불부합 조문 변경
- .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2008. 6. 22)에 따른 불부합 조례 조문 변경
-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2009. 2. 9 : 환경부예규 347호)에 따른 불부합 조례 조문 변경

나. 현 재활용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문 개정 및 중복조항 통합

- . 재활용품 유상매입 관련조항(제7조제2항) 삭제
- . 내용이 중복되는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통합

다. 조문형식, 한글맞춤법 등 법제처 지침에 맞도록 조문 수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2조의2, 제15조의2, 제21조, 제34조의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비고의 6호)
-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347호) 제6조,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4. 29 ~ 2009. 5. 19(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 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하되,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참고 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산업의 육성)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한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으로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 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1회용품사용억제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 ② 시장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 ③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정한사항 이외의 1회용품사용억제위반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시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클린사업소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클린사업소장 이 기 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활용담당 백 현 숙
	담당자 성명·전화	유 순 철 (행정 3537)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근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347호 2009. 2. 9)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 300이하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4. 빙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빙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15조의2제2항)	50	100	300
	5.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6.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의2제2항)	50	70	100
제41조제1항 100이하	7.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8.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별표 2]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근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347호 2009. 2. 9)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점업체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점업체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업체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업체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업체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50	100	200
		30	50	100
		10	30	50
		5	10	30
		50	100	200
		30	50	100
		10	30	5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회용봉투, 쇼핑백 제외)	3	5	10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 수자재질로 도포 또는 첨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법 제 조제 항에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신설2005.7.29>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안 산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 납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안산시장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영수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안 산 시 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 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성 명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④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안산시장 (인)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 의 제기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p> <p>.....</p> <p>.....</p> <p>.....</p>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7조제3항)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p> <p>.....(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삭제.....에 따른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에 관한 사항 2.삭제.....에 관한 사항 3.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p>제3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p> <p>.....삭제.....자원순환집행..... 때에는.....</p> <p>.....부터.....까지에 따른.....</p> <p>.....</p>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삭제 2001. 3. 16></u></p> <p><u>제5조<<삭제 2001. 3. 16></u></p> <p><u>제6조(재활용산업의 육성)①</u>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응자할 수 있다.</p>	<p><u>제4조(재활용산업의 육성) <삭제></u>.....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응자 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4.부터....까지..... <u><삭제></u></p>
<p><u>제7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①</u>시장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p>	<p><u>제5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삭제</u>..... 제34조의4에 따라..... <u>제8조제3호에 따른</u>..... <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삭제 2001. 3. 16>	
제9조<삭제 2004. 3. 11>	
<p>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①시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u>별표2</u>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u>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u>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u>의거</u>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u>의한</u>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으로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③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u>7일이내</u>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에 따라 <u>별표 1</u> ②에 따라해당..... 제7조제1항에 따른..... 따라..... 따른..... ③제7조제2항에 따라45일이내..... 제3호서식..... ④ (현행과 같음)</p>
제11조(의견진술)①시장은 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u>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u>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제7조(의견진술) ① 규정에 따라해당..... 처분대상자..... 불명 등..... </p>

현 행	개 정 안
<p>② <삭제 2005. 07. 29></p> <p>③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p>	<p>②에 따른 기간 중.</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p>
<p><u>제12조(이의제기)</u>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u>제8조(이의제기)</u> ①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따른.....</p>
<p><u>제13조(강제징수)</u>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p>	<p><u>제9조(강제징수)</u> 제8조에 따른..... 제6조제3항에 따른.....</p>
<p><u>제14조(과태료의 귀속)</u>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p>	<p><삭제></p>
<p><u>제15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u>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p>	<p><u>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u></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1회용품사용억제 등) ①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u>별표3</u>의 1회용품사용 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p> <p>②시장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p> <p>③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u>별표3</u>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제1항 <u>내지</u> 제3항에 정한 사항이외의 1회용품사용억제위반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제10조 <u>내지</u>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1조(1회용품사용억제 등) ①.....</p> <p>.....</p> <p>②</p> <p>.....</p> <p><u>20퍼센트</u>.....</p> <p>③</p> <p>.....<u>별표 2</u>.....</p> <p>.....</p> <p>.....</p> <p>④<u>부터</u>.....<u>까지</u>에 정한 사항 이외의<u>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u></p>
<p>제17조(준용규정)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및 <u>과징금</u>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절차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시세조례를 준용한다.</p>	<p>제12조(준용규정)</p> <p>.....<u>과징금</u> 등의<u>체납처분</u> 등에<u>절차</u> 등은..</p> <p>.....</p> <p>『<u>안산시시세조례</u>』</p>
<p>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p> <p>.....</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삭제 2004. 3. 11>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u>제41조</u>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 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5. 빙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빙용기보증금을 돌려 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법 제22 조제2항) 6.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8. (생략) 9. (생략)	300 50 50	300 100 70	300 300 100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근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 347호 2009. 2. 9))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u>제41조제1항</u> <u>300이하</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빙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빙용기보증금을 돌려 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법 제15 조제2항)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u>제41조제2항</u> <u>100이하</u>	4. 빙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빙용기보증금을 돌려 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법 제15 조제2항) 5. (현행과 같음) 6.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의2제2항)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50 50	100 70	300 1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	1. (생략) 가. (생략) (1)~(4) (생략) 나. (생략) (1)~(3) (생략) 다. (생략)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마. (생략) (1)~(4) (생략) 바. (생략) (1)~(4) (생략) 사. (생략) (1)~(4) (생략) 아. (생략)			

<별표 2>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근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 예규 347호 2009. 2. 9))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산시장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산시장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생략)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제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제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발 신 안산시장 (인)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발 신 안산시장 (인)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848
----------	------

제안년월일 : 2009. 7. 3.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부과대상으로 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제11조(1회용품사용억제 등) 제1항의 별표 2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내용을 변경함.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조문 내용 중 별표 2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 (1)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 (2)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

조문대비표